

청주교육대학교 교수공개채용 관리 지침 전문

제정 1996. 5. 13. 규칙 제1006호
8차 개정 2006. 9. 29. 규칙 제1165호
9차 개정 2010. 11. 4. 규칙 제1249호
10차 개정 2010. 11. 15. 규칙 제1252호
11차 개정 2016. 4. 27. 규칙 제1419호
12차 개정 2016. 5. 17. 규칙 제1423호
13차 개정 2018. 3. 15. 규칙 제1469호
14차 개정 2019. 4. 5. 규칙 제1480호
15차 개정 2022. 2. 25. 규칙 제1600호
16차 개정 2022. 5. 4. 규칙 제1606호

제1조(목적) 청주교육대학교 교원임용 규정 제11조의 3에 의거 교원의 신규임용을 위한 공개 채용과정의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교수공개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수 공개채용 계획) ① 총장은 매년 매학기에 각 학과별로 학과장의 신청을 받아 교육과정, 담당시간수 및 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 학기별 채용 예정인원을 결정하고 공개채용 계획을 수립한다.

② 총장은 대학교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5일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총장은 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채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조(제출서류) ①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1부 <개정 2022. 2. 25.>
2.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3. 경력증명서 각 1부
4. 석·박사학위 논문 각 1부
5. 학위논문을 제외한 최근 4년간 연구실적물 300%이내(예·체능계는 연구업적을 300%까지 관련 기관의 증명을 받아 제출할 수 있음) 단, 300%를 초과할 경우 300%로 환산함.
6. 연구실적 목록 1부.
7. 기타 총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삭제

제3조의2(제출서류의 반환) 채용절차가 완료된 후, 탈락한 지원자가 채용관련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2. 2. 25.>

제4조(전형기준) ① 각 전형단계별 배점, 심사 또는 평가내용 및 탈락기준은 별표 1의 교수공채 전형기준과 같다. 다만, 예·체능계의 초빙분야가 실기인 경우 기초심사 단계에서 예능계(음악, 미술)는 학위 취득을 위한 발표실적물로, 체능계는 실기평가로 전공적부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

② 각 전형단계의 점수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서류심사 및 전공적부심사) ① 각 심사위원이 독자적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은 초빙전공 분야와 관련 있는 학내 또는 타 대학 교원중에서 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호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총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 4. 5.>

② 탈락판정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조항신설 2019. 4.5.>

③ 위원장은 별표 2의 심사표에 심사결과를 각 위원별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취합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④ 전공적부심사 점수는 전항의 심사결과를 합산 평균한다.

⑤ 총장은 심사결과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재심사를 요청받았을 경우 즉시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필기시험) 삭제

제7조(연구실적심사) ① 서류심사 및 전공적부심사에 합격한 응시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심사위원은 각 심사대상 논문의 전공영역 및 논문이 쓰여진 외국어를 참작하여 학내 또는 타 대학 교원중에서 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호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총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 4. 5.>

③ 각 심사위원은 연구실적물의 질을 고려하여 건별로 독자적으로 심사하며 별표 3의 심사보고서에 심사 요지를 상술하고 평가 등급을 부여한 후 봉인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 4. 5.>

④ 일반논문은 연구실적 인정환산율에 따라 100%를 한 단위로 점수를 산출한다.

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또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은 우대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별 및 단위별 점수를 합산 평균하고 이를 합한 점수를 연구실적 점수로 한다.

⑦ 위원장은 기초심사와 연구실적심사결과를 합산하여 다 득점자 순으로 5명 이하를 교육능력심사대상자로 추천한다.

⑧ 예·체능계의 경우 학과의 요청에 따라 연구실적심사와 병행하여 실기심사를 부가할 수 있다. 단, 기초심사 단계에서 실기심사를 실시한 경우는 부가하지 않는다.

제7조의2(교육능력심사) ① 제7조 7항에서 추천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초빙전공분야의 담당 교육과정 영역을 공개수업으로 별표 4의 교육능력심사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③ 삭 제

④ 심사위원은 해당학과 교수 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학내 또는 타 대학 교원중에서 교원 7인 이내로 위촉하고, 교무처

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⑤ 교육능력점수는 심사위원 전원의 점수를 합산 평균한다. 단, 심사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 합산시 면접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인은 제외한다.

⑥ 교육능력심사는 참관 희망자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 강의 심사 지장이 있는 경우 교육능력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의 합의를 거쳐 참관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5.>

제8조(면접심사) ① 교육능력심사에 합격한 응시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별표 5의 면접심사표에 의거 각 면접위원이 독자적으로 평정하고 평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③ 심사위원은 총장·교무처장·학생처장·해당 학과 교수 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교무처장·학생처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학내 또는 타 대학 교원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④ 면접점수는 면접위원 전원의 점수를 합산 평균한다. 단, 심사위원이 5인이상인 경우 합산시 면접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인은 제외한다.

제9조(최종합격자 선정) ① 교무처장과 해당학과장은 각 전형단계별 점수를 합산하여 다득점자순으로 2명을 총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교무처장이 각 전형단계별 점수를 합산하여 다득점자순으로 2명을 총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추천된 자 중에서 1명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한다.

③ 최종합격자 선정시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전체 신규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

1. 각 학과별 교원현원 중 동일대학의 학사학위 소지 비율이 낮은 학과

2. 각 학과별 교수 1인당 담당학점수가 높은 학과

3. <삭제 2022. 2. 25.>

4. 각 학과별 구분 없이 공채과정 점수의 다득점자

④ 삭제

⑤ 최종합격자에게 임용 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이외에 교수의 품위와 대학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전형결과와 공개) 전형결과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에 교수회의에서 공개하며 그 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 제6항에 의거 공개한다.

제11조(공채공정관리위원회) ① 교수신규채용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채공정관리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함)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개정 2022. 2. 25.>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당연직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이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2. 2. 25.>

③ 위원회는 심사위원 또는 지원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와 총장이 공정성여부의 심사를 요청한 경우에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2. 2. 25.>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특정 심사단계의 심사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으며, 조사결과 및 조치방안 등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25.>

제12조(심사위원 제척 및 회피) ① 기초심사 및 연구실적심사의 외부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 선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4호와 제5호만 제척기준에서 제외하고, 그 적용의 순서는 제5호에서 제4호의 순으로 한다. <신설 2022. 2. 25.>, <개정 2022. 5. 4.>

1. 지원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 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자
2. 지원자의 학위논문(석사, 박사) 지도교수
3. 지원자와 연구실적물 공동연구자(목록으로 제출된 연구실적물 포함)
4. 지원자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위원
5. 지원자의 석사학위 논문심사 위원

② 기초심사 및 연구실적심사의 내부심사위원은 제1항제1호에서 제3호의 제척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 5. 4.>

③ 교육능력심사 및 면접심사 심사위원은 제1항제1호의 제척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 5. 4.>

④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 전까지 [별표 제6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며, 제척사유에 해당됨을 인지한 경우, 그 즉시 [별표 제7호 서식]의 심사위원 회피(기피)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회피하여야 하며, 기피될 수 있다. <신설 2022. 2. 25.>

<개정 2022. 5. 4.>

부 칙

이 지침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12. 규칙 제1125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 29. 규칙 제1165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1. 4. 규칙 제1249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1. 15. 규칙 제1252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27. 규칙 제1419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5. 17. 규칙 제1423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15. 규칙 제1469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5. 규칙 제1480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25. 규칙 제1600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5. 4. 규칙 제1606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9. 4. 5.>

교 수 공 채 전 형 기 준

전형 단계	구 분	위 원	배 점	전 형 기 준						탈 락 기 준		
기초 심사	서류 심사	서류심사위원	합 격 불합격	공 통	학력 : 박사(예·체능계 석사)학위와 초빙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로 합격, 불합격 결정					박사(예·체능계 석사)학위와 초빙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로 합격, 불합격 결정		
					경력 : 교수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의한 연구실적연수 또는 교육경력연수의 자격기준					4년 미만인자		
	박사학위 논문 내용과 초빙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전 공 적 부 심 사 구 분	전공적부 심사위원	10점	구 분		등 급	A (매우일치)	B (상당일치)	C (부분일치)			
				인 문 사 회 자 연 계	박사학위논문 내용과 초빙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10	9	8				
예·체 능 계				박사	박사학위논문 내용과 초빙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10	9.5	9				
				석사	석사학위논문 내용과 초빙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8	7.5	7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 초빙분야가 실기인 경우 필요에 따라 해당학과에서 별도의 실기평가기준(세부평가지침 첨부. 단, 배점은 전공적부심사의 등급에 준함)을 마련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전공적부심사를 대체하여 적용한다.												
전공 심사	박사학위 논문 및 최근 4년 이내 300%의 연구실적물의 질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의거 심사											
	연 구 실 적 심 사	연구실적 심사위원	25점 (실기를 부가할 경우 -실기 심사 10점 -연구실적심사 15점)	공통	단위	등급	A	B	C	D	E	합산평균 점수가 "D"(17.5점)이하 인자 탈락 단, 석사 학위가 최종학위인 경우는 "D"(14.0점) 이하인자 탈락
					박사학위논문	10	9	8	7	6		
					일반논문100%	5	4.5	4	3.5	3		
					일반논문100%	5	4.5	4	3.5	3		
					일반논문100%	5	4.5	4	3.5	3		
				예·체 능 계	박사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석사학위논문을 심사하되 일반논문 100%에 준하여 심사함. 실기영역인 경우 일반논문 300%를 청구교육대학교교원임용규정【별표1】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연수 환산인정율에 의함. 단, 실기 심사를 병행할 경우 해당학과에서 별도의 실기평가기준(세부평가지침 첨부. 단, 배점은 연구실적심사의 등급에 준함)을 마련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실시한다							
					공통	논문(예·체능계의 경우 발표작품 포함)이 중복된 경우나 유사논문으로 판단될 경우 “0”점을 줄 수 있다.						
	교 육 능 력 심 사	교육능력 심사위원	20점	공 통	심 사 요 소	심 사 결 과						
						A	B	C	D	E		
					강의 준비와 자료의 적절성(6점)	6	5	4	3	2		
					강의 내용의 전문성(7점)	7	6	5	4	3		
	강의 진행 능력과 강의 태도(7점)	7	6	5	4	3						
면접 심사	면접 심사	면접심사위원	20점	공 통	평정결과 평정요소	A	B	C	D	E	합산평균 점수가 "D"(14.00점)미만 인자 탈락	
					대학교원으로서의 인성(10점)	10	9	8	7	6		
					대학교원으로서의 학문적 자세(10점)	10	9	8	7	6		

[별표 2] <개정 2019. 4. 5.>

서류심사 및 전공적부 심사표

초빙전공분야 :

응시번호 :

성 명 :

구 분	심 사 내 용					득 점 (탈락)	비 고	
서 류 심 사	학 력 (최종학력)		※ 박사(예·체능계 석사)학위와 초빙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로 합격, 불합격 결정					
	경 력		※ 연구실적연수 또는 교육경력연수 4년미만인자 는 탈락					
전 공 적 부 심 사 (10점)	구 분		등 급		A (매우일치)	B (상당일치)	C (부분일치)	
	인 문 사 회 자 연 계		박사학위논문 내용 과 초빙전공분야와 의 일치정도		10	9	8	
	예 · 체 능 계	박사	박사학위논문 내용 과 초빙전공분야와 의 일치정도		10	9.5	9	
		석사	석사학위논문 내용 과 초빙전공분야와 의 일치정도		8	7.5	7	
	합 계(10점)							

201 년 월 일

서류심사 및 전공적부심사위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별표 3] <개정 2019. 4. 5.>

연구실적심사보고서

심사 대상자 소속 직 성명	미 기 재		평 가	A	B	C	D	E
논 문 제 목								
발 표 년 월 일		발 표 기 관 명						
(심사요지)								
201 년 월 일 연구실적 심사위원 소 속 : 전공과목 : 직 급 : 성 명 : 인								

※ 연구실적물의 질을 고려하여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해당란에 0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심사요지를 상술하고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뒷면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4]

교 육 능 력 심 사 표

초빙전공분야 :

응시번호 :

성 명 :

심사요소	심 사 결 과					특 점	비 고
	A	B	C	D	E		
강의 준비와 자료의 적절성 (6점)	6	5	4	3	2		
강의 내용의 전문성 (7점)	7	6	5	4	3		
강의 진행 능력과 강의 태도 (7점)	7	6	5	4	3		
합 계 (20점)							

201 년 월 일

교육능력심사위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별표 5]

면 접 심 사 표

초빙전공분야 :

응시번호 :

성 명 :

평 정 요 소	평 정 결 과					득 점	의 견
	A	B	C	D	E		
1. 대학교원으로서의 인성(10점)	10	9	8	7	6		
2. 대학교원으로서의 학문적 자세(10점)	10	9	8	7	6		
합 계 (20점)							

※ 합산평균점수가 "D"(14.00점)미만인자 탈락

201 년 월 일

면접심사위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서 약 서

소 속 :

직위 (급) :

성 명 :

위 본인은 ()학년도 ()학기말 청주교육대학교 교수공채 심사위원회 임함에 있어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며, 심사와 관련하여 그 누구에게도 청탁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심사 대상인 지원자와 「청주교육대학교 교수공개채용 관리지침」 제12조의 제척사유에 해당됨을 인지한 즉시 교무처에 회피(기피)신청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후 심사위원으로 임명된 사실과 업무 중 인지한 사실에 대하여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할 것이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인 : (서명)

청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심사위원 회피(기피) 신청서

소 속 :

직위 (급) :

성 명 :

위 본인은 () 사유로 인하여 ()학년도

제 ()학기 임용 예정 교수 공개 채용의 ()심사위원을

회피(기피)하고자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인 : (서명)

청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